

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1999. 10. 6 규칙 제 212호
개정 2005. 10. 5 규칙 제 477호
일부개정 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
일괄개정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21. 12. 20>

제2조(보조금 및 기업부담금) ① 시장은 매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(이하 “자금”이라 한다)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「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대학과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시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시의 보조금 이외의 추가소요경비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제3조(보조금 신청)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협약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제4조(보조금 교부대상자의 결정)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부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기업 당 1개 과제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기업에서 공동애로 기술과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1개 과제로 하여 우선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20>

제5조(사업기간)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교부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1년 이내의 사업기간에 실용화 가능한 과제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② 시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추가소요경비는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6조(자금교부 시기)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대학 및 연구과제 책임 교수와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세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21. 12. 20>

제7조(관계자료의 제출) 대학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중지할 경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사업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의 열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21. 12. 20>

1. 기술개발사업 운영실적 보고서 및 관련자료
2. 사업비정산서 및 제반증빙서류
3.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

제8조(사업비의 정산) 시장은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하여 잔액이 있거나, 자금을 반환 받을 때에는 기업과의 자금부담 비율에 따라서 환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20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77호>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사 업 계 획 서

- 기술개발사업의 목적
- 기술개발사업의 내용
- 기술개발사업 수행계획
- 기술개발사업의 소요 경비
 - 총경비와 자기부담액
 - 산출기초
- 자금의 사용방법
- 보조금의 자부담 경비 부담자 현황과 금액 및 방법
- 사업의 효과
-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
- 기 타

년 월 일

업 체 명 :

신 청 인 :